

1. 의결주문

「군사법원법」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군사법원법」 제36조제3항의 개정으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0호의 “고등군사법원장”을 “국방부검찰단장”으로 직제를 변경하기 위함.

3. 주요토의 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5. 25. ~6. 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0. 국방부검찰단장

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제2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영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이나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이나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현행	개정안
제19조(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)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대 또는 기관의 지휘관에 대하여 각 구간 순환하여 보직하되, 같은 군 소속의 장교를 3회 이상 연속하여 동일 직위에 보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그 직위의 전문성 및 특수성과 군 인력운영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	제19조(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) ① (현행과 같음)
1. ~ 9. (생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<u>10. 고등군사법원장</u>	<u>10. 국방부검찰단장</u>
11. ~ 20. (생략)	11. ~ 20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	
연 락 처	(02) 748-6424